#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1

발의연월일: 2024. 7. 5.

발 의 자:소병훈·백승아·문정복

박 정・정성호・안태준

박희승 • 안호영 • 김교흥

이수진 · 김선민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안전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설치대상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설치대상인 '역 구내'의 경우 설치 범위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과 같은 교통약자를위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 요건으로 '안전사고'의우려만을 명시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가 발생할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설치 요건에 '범죄 발생'의 우려를 각각 추가하는 한편, 정부가 영상기록장치의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1항제2호, 제39조의3제

7항 신설).

법률 제 호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1항제2호 중 "승강장"을 "승강장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로, "안전사고"를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 운영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순영 등) ①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	
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	
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철도차량 또는 철	
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승강장</u> 등 대통령령으로 정	2. <u>승강장 및 「교통약자의 이</u>
하는 <u>안전사고</u> 의 우려가 있는	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
역 구내	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u>안전사고나 범죄발생</u>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⑦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
	<u>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에 필</u>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u>⑦</u> (생 략)	<u>⑧</u> (현행 제7항과 같음)